

▶特輯—壬午軍亂110周年紀念, 壬午軍亂을 해부한다

壬午軍亂에 있어서 淸國의 介入은 正當한 것이었는가

權 錫 奉

(中央大 史學科 教授)

머 리 말

1882년(高宗 19)에 야기된 壬午軍亂은 한국근대사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매우 주목되는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朝·淸관계라는 측면으로 볼 때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즉 淸은 朝鮮에 대하여 종래에 취했던 정치적 불간섭주의를 수정하여 적극간섭주의정책으로 전환하니 이른바 宗主權의 강화라는 것이 그것으로 그 시발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임오군란이었다.

임오군란이 야기되었을 때 청이 개입한 문제와 나아가 그 개입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려면 첫째, 임오군란 이전에 있어서 청측의 정책입안자나 洋務官僚들의 對朝鮮認識과 政策이 어떤 것이었으며, 둘째, 임오군란 직후에 있어서 淸國개입의 핵심이 되는 大院君의 被拉은 어떻

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에 이 두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壬午軍亂 이전에 있어서 淸側の 對朝鮮認識과 政策

1866년(고종 3) 丙寅洋擾시기부터 1876년(고종 13) 江華島砲擊사건 시기까지 조선에 대한 洋務官僚들의 인식은 매우 빈약하고 입수하고 있는 정보도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없는 풍문정도였다. 예컨대 조선의 日本에 대한 進貢문제가 朝·日관계의 갈등원인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국방력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조선은 積弱한 나라로서 무기도 구식이어서 日本에 대적할 수 없으며,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청에 구원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는 반면, 나라는 비록 小國이나 인심이 굳건할 뿐만 아니라 濱江, 水路에 高山, 暗礁 등이 많아 방어하기 쉬우며 또한 전술이 뛰어나 쉽사리 외세에 의해 침공당하지 않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조선에 告警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지원문제에 관하여 양무관료들의 주장도 적극지원론과 신중론으로 양분되고 있다. 丁日昌, 劉坤一, 李璠, 陳本植, 梅啓照, 吳大澂, 姚文棟 등의 주장이 전자에 속한 데 반하여 청의 대외정책을 실제 주관하고 있었던 總理衙門의 諸大臣이나 北洋大臣兼直隸總督인 李鴻章의 주장은 후자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신중론이라 하더라도 파병지원문제를 전혀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병력지원문제와 정세를 분석하여 대처하여야 한다”¹⁾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 吳汝綸, 『李文忠公全集』(臺北, 文海出版社, 1965, 臺北初版) 奏稿 卷 39, 38a쪽, 〈議覆陳本植條陳片〉(光緒 6년 12월 11일).

그러나 이와 같은 양무관료들의 빈약한 朝鮮觀도 일본의 강화도포격 사건과 1879년의 琉球폐합사건 및 1880년의 淸·露伊犁환부교섭 등이 진행되는 동안 점차 변화해 갔다. 즉 조선문제에 관한 양무관료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그들은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확고한 對朝鮮政策의 수립을 촉구하게 되었다.

藩邦문제중에서도 특히 조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지정학적 인 견지에서 東三省과 京畿重地의 屏蔽로서 조선의 위치를 파악하였고, 따라서 조선의 안보는 청의 안위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인식한 데 있다. 더욱이 '外藩盡削'의 위기의식은 조선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시켰다.

조선에 대한 佛·美·英 등 열강의 위협보다도 특히 露·日 양국의 위협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시킨 것은 열강의 경우 그의 목적이 조선과의 입약, 통상 내지 傳教에 있다고 본 데 반하여 러·일의 경우는 영토적 침략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따라서 러·일의 조선에 대한 위협은 곧 청의 안위문제와 직결된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辛未洋擾 시기에 총리아문, 李鴻章, 曾國藩 등이 美艦隊의 조선침공보다도 日本陰助說에 더 관심을 집중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따라서 1879년 이전까지 청의 대조선정책은 존재할 수 없었다. 청측에서 구체적인 대조선정책을 구상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양무관료들의 빈약한 대조선관 이외에 조·청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불간섭주의, 청 자체의 국력의 한계 및 조선정부의 閉關自守에 대한 확고한 결의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청측에서는 조선문제를 둘러싸고 열강과 러·일 등이 분쟁을 일으켰을 때 이른바 '從中排解'를 시도하였으며 그 중요성에 따라 조선정부에 통고하여 대응하게 하는 정도였다. 신미양요 직후의 경우 조선정부에서 청의 속방임을 내세워 청의 보호를 요청하였을 때 총리아문에서는 이 요청이 조선정부의 진심에서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며 다만 청의 영향력을 빌어 미국의 침략의도를 억제하려 한다고 판단할 정도

였다. 즉 청은 종주국으로서 속방인 조선에 이용당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강화도포격사건 직후에도 李鴻章은 日使 森有禮의 用武에 뜻이 없다는 말을 일단 믿는 토대 위에 ‘息事寧人之計’를 택하여 총리아문에 건의하였고, 총리아문에서는 주청을 거쳐 그의 건의를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 조선정부에 일본과의 수약을 권고하게 된 것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침략위협이 거론되었을 때에도 러시아는 우선 수약을 요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朝·露간에 조약체제를 갖추으로써 침략위협을 벗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이 뜻도 조선정부에 전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880년 12월에 道員 陳本植이 東邊·中江지방에 병력집중을 바탕으로 한 防露論을 주장하였을 때 李鴻章은 군사비 증액의 불가함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1879년에 조선에 대한 러·일의 침략위협이 가중되었을 때 청은 대조선정책으로 列國立約勸導策을 추진하니 이것은 종래의 朝·淸관계에서 견지되어 온 정치적 불간섭주의의 수정을 의미한다.

이 勸導策은 동년 4월 25일에 前福建巡撫 丁日昌이 상주문의 부견으로 올린 ‘海防應辦事宜 十六條’ 중 제10조에서 건의한 것이다. 그의 주장은 조·일수약으로 이미 조선은 수약시기에 접어들었음을 중시하여 열국입약으로 세력균형을 이룸으로써 러·일의 침략위협을 억제한다는 것이며, 또한 수약이후 조약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강책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들고 있다. 이러한 丁日昌의 건의는 총리아문에서 채택되었고, 奏明을 거쳐 李鴻章에게 이 권도책을 내용으로 하는 密函을 그와 이전부터 文通하고 있었던 領中樞府事 李裕元에게 전달토록 하였다.

동년 7월 9일자로 된 밀함에서 李鴻章은 러·일의 조선에 대한 침략위험성을 지적하면서 특히 일본이 열강 또는 러시아와 陰結할 가능성을 들어 경고하였으며, 이어서 이러한 침략위험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以毒攻毒策으로서의 열국입약책을 권도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強弱相維論과 公法の 적용 및 통상이익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끝으로 이 정책의 결정은 조선국왕이 廣集廷臣하여 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권도책은 조선정부에 의해서 거부되고 말았다. 즉 이유원은 동년 11월 7일에 辭陞한 謝恩兼冬至正使 韓敬源편에 부송한 李鴻章 앞으로의 답서에서 정식으로 거부하고 있는 바 李鴻章이 이 답서를 받은 것은 그 다음 해인 1880년(고종 17) 2월 5일이다. 이유원은 동 답서에서 우선 조선의 정세가 '不暇外交'의 상태이며, '泰西之學'을 천주교로 간주하여 국법으로 금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다음 이어서 李鴻章의 주장에 대하여 비판 내지 회의를 표명하고 있는 바 첫째, '以毒攻毒說'에 대하여 '독을 만나면 회생이 불가능'할 뿐이라고 하였고, 둘째, 強弱相維論과 공법의 적용에 대하여 유구멸망의 예를 들어 그 실효성에 회의를 표명하였으며, 세째, 통상이익에 대해서도 일본의 전철을 밝을 뿐이라 하면서 특히 조선의 地產貨物의 沽惡을 들어 실제로 통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청측에서 추진한 대조선열국입약권도책은 조선측의 거부로 일단 좌절되었으나 곧이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즉 그 전기는 첫째, 1880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슈펠트 제독이 일본의 알선을 통하여 시도한 조·미교섭이고, 둘째, 슈펠트 제독의 행적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었던 駐日淸出使大臣 何如璋은 조·미교섭이 실패한 다음, 李鴻章에게 요청하여 슈펠트 제독을 天津에 초치, 聯美論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세째, 같은 시기에 派日된 수신사 金弘集을 통하여 何如璋·黃遵憲이 외교권도책을 추진하였고, 네째, 조선정부에서 軍械學造事와 練兵事를 위한 교섭이 시작되었으며, 다섯째, 淸·露伊犁환부교섭에 뒤이은 러시아 해군의 남진 위협이 가중되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러 전기중에서도 특히 何如璋·黃遵憲이 추진한 외교권도

책은 그 이후에 있어서 청의 대조선정책을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何如璋은 총리아문과 李鴻章이 추진한 바 있는 대조선열국입약권도책의 귀추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勸令外交의 기회를 찾고 있었으니 그 동기가 된 것은 러시아의 남진책이었다. 그는 日本外務卿 寺島, 英公使 파크스 등과의 접촉을 통하여 朝鮮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절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防露策으로 구상한 것이 권령외교, 遣使保護 등 문제였다. 그리고 연미론을 구체화시킨 것은 슈펠트 제독의 朝·美교섭시도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던 시기에 金弘集이 到日한 것이다.

何如璋·黃遵憲은 6차에 걸친 김홍집과의 회담을 통하여 그가 구상한 권령외교의 실효를 어느정도 거두었으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黃遵憲에게 명하여 찬술한 것이 『朝鮮策略』이다. 이 책략의 찬술의 의도는 물론 防露策을 실현하기 위하여 '親中國 結日本 聯美國'이라는 외교노선을 취하고 아울러 자강문제를 강구함으로써 조선의 안전을 꾀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何如璋이 총리아문에 보낸 보고문에 의하면 何如璋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조선은 청의 속방으로서 열강에 의하여 멸망되어서도 안되며 또한 사직이 보존되는 한 속방의 명분도 상실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何如璋은 조선의 외교문제뿐만 아니라 자강문제도 청측의 주도하에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何如璋은 고종의 밀사로 파견된 李東仁을 통하여 연미론에 대한 조선정부의 견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후속조치로 총리아문에 「主持朝鮮外交議」를 건의하고 있는 바 이 外交議에서 그는 속방명분론을 한층 구체화시켜 朝·美立約의 경우 華員派遣 主持와 光緒帝의 재가 및 조약문상의 속국명문화 등을 주장하였다. 이 때 총리아문과 李鴻章은 조선의 정치적 자주권이 부정되면 입약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건의에 대하여 반대하고 계속 '密

爲維持保護'하도록 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 이르러 조·미 수약문제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何如璋의 건의가 대부분 실천에 옮겨졌다는 사실은 곧 청의 대조선정책이 적극화해 갔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와 같이 1882년 봄에 이르면 청이 조선의 외교문제에 깊이 간여한 결과로 조·미수약이 체결되었고, 또 한편 조선의 자강문제를 위하여 그동안 조선정부와 李鴻章사이 에 교섭이 진행되었던 軍械學造事를 목적으로 한 領選使行이 파견되는 등 청의 적극적인 대조선정책은 실효를 거두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임오군란이 야기된 것이다.²⁾

2. 淸軍出兵과 大院君의 被拉

임오군란의 발발소식이 청측에게 알려진 것은 淸出使日本大臣 黎庶昌의 두 차례에 걸친 電文을 통해서이며, 1882년 6월 18일 오후 2시의 일이다. 그리고 총리아문에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署理北洋大臣 張樹聲의 서함이 전달된 6월 19일이다.

張樹聲은 군란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조치를 강구하여 우선 黎庶昌이 건의한 바 “중국에서 병선을 조선으로 보내어 군란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³⁾라는 대응책을 받아들여 統領北洋水師提督 丁汝昌에게 왜선 2척과 병선 1척의 출동준비를 명하였고, 또한 조·일교섭의 조정자로서 侯選道 馬建忠이나 前任出使日本大臣 何如璋 중 한사람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한편 張樹聲은 天津海關道 周馥으로

2) 權錫奉, 『淸末 對朝鮮政策史研究』(一潮閣, 1986), 第2章 淸 同治·光緒초년대 洋務官僚의 對朝鮮觀, 第3章 洋務官僚의 對朝鮮列國立約勸導策, 第4章 <朝鮮策略>과 淸側 意圖, 第5章 領選使行考 참조.

3)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淸季中日韓關係史料』(近代史研究所, 臺北, 1972) 第2卷, 735a쪽, 文件番號 463, 光緒 8년 6월 19일 署北洋大臣張樹聲函 附件 照錄 抄摺 <黎庶昌 第二次電文>.

하여금 당시 天津에 체류중이었던 영선사 金允植, 문의관 魚允中 양인과 접촉, 군란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조선정정에 관한 정보를 입수토록 하였다. 丁汝昌, 馬建忠의 派船觀變문제는 6월 21일의 총리아문의 결정에 따라 실행되었다.

여기서 매우 주목되는 것은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사이에 여섯차례에 걸쳐 김윤식, 어윤중과 周馥이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물론 黎庶昌이 수시로 보낸 전문을 통하여 군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의 회담을 통하여 얻어진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다음에 어떠한 사실을 청측이 알게 되었으며 어떠한 方略이 논의되었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6월 18일에 있었던 제1차 김윤식과 周馥의 회담에서 김윤식은 군란은 斥和를 주장하는 亂黨의 소행일 것이며, 이미 그러한 形跡이 있었다는 것도 밝히고 있고, 그 다음 날에 있었던 김윤식·어윤중과 周馥의 제2차 회담에서는 한결음 나아가 '滋事必有由來', '必有難言之危機'라는 표현으로 대원군의 정변임을 직접적으로 擧名치는 않았으나 척화만이 아니라 不軌를 기도하는 난당의 소행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에 따라 張樹聲과 周馥은 군란이 국왕의 반대파에 의하여 야기된 정변임을 짐작하게 되었고 더욱이 6월 21일에 王宮괴격 사실을 알린 黎庶昌의 전문을 접하자 김윤식·어윤중의 제보가 적중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派船觀變의 차원이 아닌 派兵鎮壓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그 준비를 위해 登州에 주둔하고 있었던 淮軍統領 吳長慶의 來津을 하명하고 있다.

김윤식이 마침내 大院君亂首說을 공명한 것은 6월 22일에 周馥에게 보낸 서함에서이다. 김윤식은 이 서함에서 특히 李載先사건을 들어 대원군이 야기한 정변일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그는 같은 날 있었던 제4차 회담에서 대원군과의 일본과의 제휴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출동하는 청병력은 千명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派兵入京 方略으로는 王京鎮守의 명목을 빌어 조선정부에 사전 통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대원군을 제거하는 방안으로는 대원군의 私第를 포위한 다음 康穆王妃(趙大妃)의 명으로 그의 죄목을 들어 賜死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을 위하여 해로운 존재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⁴⁾라는 점까지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김윤식·어윤중 양인의 제보를 통하여 군란의 성격과 대원군난수설을 확인하게 된 張樹勳은 6월 24일 이 사실을 총리아문에 보고하면서 대응책으로는 우선 청육군의 속파를 단행하고, 대원군의 제거문제는 군신부자간에 관련된 것임으로 折衷禮意를 기본방침으로 하여 討逆助順의 대의명분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吳長慶이 일의 적임자라고 추천하고 있다. 결국 청측은 군란소식을 접한지 불과 일주일만인 6월 24일에는 이미 丁汝昌, 馬建忠을 哨探觀變과 일병행동의 견제를 위하여 조선에 파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육군의 속파와 대원군의 제거라는 새로운 대응책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청육군의 속파가 결정된 다음 6월 26일에 있었던 제5차 회담에서 김윤식은 우선 파병에 따른 兵餉購辦문제, 진병로, 상륙문제, 주둔지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이어서 閔妃의 被禍원인으로는 대원군과의 정쟁과 개화정책을 들었으며, 추측되는 피화관원으로는 閔泳翊, 閔謙鎬 등 척족과 김홍집, 洪英植, 李祖淵 등을 비롯하여 그 자신의 처자까지도 포함한 외교정책에 관련한 사람들일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원군의 제거문제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군란에 관련한 자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함은 물론이요 대원군 일가에 대해서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다”⁵⁾라고 주장하면서 그 제거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청군이 곧바로 進京하면 정세가 급변할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告諭를 보내어 대원군을 청 군진에 오도록 하여 面問事狀한다는 것이다. 만약 대원군이 출두하면 拘囚시키되 오지 않을 경우에는 거병토벌

4) 上揭『淸季中日韓關係史料』, 第2卷, 文件番號 485, 光緒 8년 6월 25일 署北洋大臣張樹勳函 附件〈照錄光緒八年六月二十二日津海關道周馥與領選使金允植問答筆談〉.

5) 上揭『淸季中日韓關係史料』, 第2卷, 文件番號 498, 光緒 8년 6월 29일 署北洋大臣張樹勳函 附件 1, 〈照錄光緒八年六月二十六日津海關道周馥與領選使金允植問答筆談〉.

시킬 뿐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大院君誘囚方略이 결국 청측이 세운 절충예의로써 제거한다는 원칙과 일치하여 실천에 옮겨졌다는 점은 주목된다 하겠다.

그 다음 날인 6월 27일 제6차 회답에서도 김윤식은 거듭하여 대원군의 행적, 대원군과 민비와의 정쟁, 李載先사건 및 國王不廢立의 이유 등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6월 30일에 있었던 김윤식과 張樹聲과의 회답에서도 김윤식은 名正言順의 방략으로 일본측에게는 탄압난당, 난당측에게는 조정일인이라는 것을 표방하도록 제안하면서 대원군의 제거 문제에 관해서는 제6차 회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유인방략을 거듭 주장하였다. 즉 국왕이 무사하도록 하는 문제는 대원군의 勿驚여부에 달려 있으니 우선 우호적인 접촉을 시도하여 대원군이 응하게 되면 유수는 쉽게 성공할 수 있으나 응하지 않을 경우 좋은 말로 안심시키면서 進兵하여 왕성을 포위하면 결국 청측으로 오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언급해 둘 것은 張樹聲의 幕友였던 薛福成의 건의서에 관한 문제이다. 薛福成 스스로도 자신의 건의가 청측 대응책의 기초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다룬 論著에서도 이러한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 건의서에 보면 大院君除去方略에 관하여 7개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7개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의 정정에 정통한 사람의 成案이라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으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제6항에 “大院君을 拘囚한 후 淸에 부송하기 이전에 난당에 의해 劫奪의 우려가 발생하였을 경우 청의 威重으로 임하여 康穆太妃之命 賜之死可也”라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康穆太妃之命 賜之死可也”라고 한 대원군제거방략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22일에 있었던 제4차 김윤식과 周馥의 회답에서 김윤식이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건의서를 성안하는 데까지 김윤식과 어윤중이 관련이 있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료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짐작할 따름이다. 더욱이 동 건의서가 張樹聲에게 전해질 무렵인 6월 30일에는 이미 馬建忠에 의해 大

院君誘囚가 실천에 옮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의 건의가 사실상 청측 대응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하간 丁汝昌, 馬建忠 양인이 仁川에 도착하여 詳探한 결과 알게 된 것은 發亂의 직접동기가 兵糧減斛에서 비롯된 軍變이라는 새로운 사실이었다. 이 사실은 馬建忠은 물론 그와 함께 귀국한 어윤중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하였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된다. 따라서 어윤중은 발난에 직접동기가 비록 병량감곡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대원군난수설을 관철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馬建忠 역시 군란과 대원군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추구한 것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馬建忠 일행이 인천에 도착한 다음날인 6월 28일 日本外務書記官 近藤眞鋤가 馬建忠을 예방하여 대원군이 민비를 弑害하고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난 그 자체는 ‘因兵作亂’이라 하여 군란으로만 설명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어윤중은 같은 날 威遠艦으로 馬建忠을 방문하여 이재 선사건을 들어 난수설을 주장하면서 군란과 관련한 행적으로 민비를 시해하고 국왕을 유폐시키고 외교에 관여한 인물을 제거한 사실 등을 들고 있다. 뒤이어 그는 7월 1일의 馬建忠과의 회담에서 군란에 있어서의 대원군의 陰唆여부를 馬建忠이 묻자 “처음에는 군란으로 시작되었으나 군란이 진행되는 동안 대원군이 이들과 음약하여 마침내 큰 변으로 발전하였으니 결국 대원군이 사주한 것으로 일본인이 그와 같은 통문을 보았다고 한다”⁶⁾라고 하여 대원군의 使嗾에 의한 것임을 단언하였으며, 7월 3일의 회담에서도 대원군난수설을 주장하면서 대원군의 제거문제에 대해서도 “대원군은 천하에 용서할 수 없는 도적이니 조선의 신하나 백성중 그를 죽여 그의 살점을 먹지 않으려는 사람은 없으나 국왕의 사친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뿐이다. 만약 중국에서 그러

6) 上掲『淸季中日韓關係史料』, 第3卷, 851b-852a쪽, 文件番號 534, 光緒 8년 7월 22일 署北洋大臣張樹聲函 附件 9, 〈初一日一點二刻魚允中來舟筆談〉.

馬建忠, 『東行三錄』(臺北, 廣文書局, 1961, 臺北初版) 62-63쪽, 壬午 7월 1일條.

한 처단을 내린다면 조선의 뜻있는 자들은 모두 용약분신할 것이다”⁷⁾라 밝히고 있다.

이러는 동안 馬建忠은 계획했던 大院君誘囚를 위한 첫번째 음모를 꾀했던 바 6월 30일 오후 3시에 있었던 趙寧夏, 김홍집과의 회담에서이다. 馬建忠은 일본과의 교섭문제가 지연될 경우 군사배상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속결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다음 첫째, 일본의 파병이 “명분이 있고, 둘째, 花房公使의 뜻이 매우 불만에 차 있어 교섭이 어려울 것임을 듣고, 셋째, 花房公使는 국왕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등 교섭의 절박성과 위기감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국왕이 직접 교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대원군이 인천에 와서 협상에 응하여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대원군이 직접 교섭하게 되면 그의 위엄과 명망이 본래 높을 뿐만 아니라 그를 비롯한 청측에서 책임지고 보호하면 일본측이 감히 무례하지 못할 것임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조영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약속하였다. 이때의 사실을 馬建忠은 張樹聲에게 보낸 보고문에서 “처음에 저는 대원군을 피어내 우리 병선에 오도록 하기 위하여 花房公使가 군사를 이끌고 입경하게 되면 심하게 유린당하게 될 것이니 만약에 대원군이 직접 仁川에 와서 협상에 응한다고 하면 花房公使의 상경을 막을 수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⁸⁾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馬建忠의 첫번째 대원군유수계획은 7월 2일 永宗僉使편에 보낸 대원군의 서함에서 內亂未定の 이유를 들어 出京할 수 없음을 통고함으로써 실패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대원군의 피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馬建忠이 고대하던 吳長慶軍 2천명이 南陽灣에 입항한 것은 7월 7일이었다. 馬建忠은 右營管帶 吳兆有부대와 함께 동일 하오 7시에 馬山浦에 상륙하였고, 밤 12시에 南陽府에 도착하고 있다. 그후 吳長慶

7) 上揭 『清季中日韓關係史料』, 第3卷, 854a-855b쪽, 文件番號 534, 光緒 8년 7월 22일 署北洋大臣張樹聲函 附件 11, 〈初三日午後九點鐘魚允中來舟筆談〉.

上揭, 『東行三錄』, 64쪽, 壬午 7월 3일條.

8) 上揭, 『東行三錄』, 78쪽, 壬午 7월 14일條, 〈稟振帥〉.

이 대신 보낸 後營管帶 張仲明부대중 200명을 선발인솔하고 水原에서 일박한 다음 입경하여 南別宮에 도착한 것은 10일 저녁이었다. 남별궁에 도착한 직후 대원군 부자의 예방이 있었으며, 이때 馬建忠은 “중국군이 온 것은 오로지 일본인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뜻은 없습니다”⁹⁾라고 말하여 대원군을 안심시키고 있다.

馬建忠은 인천으로 퇴출한 花房公使의 협상결렬의사를 회유하기 위하여 11일에 인천으로 가서 두차례의 회담을 가졌고, 귀경한 것은 12일 저녁 7시였다. 이때 이미 丁汝昌은 習流軍 100명을 이끌고 남별궁에 와 있었으며, 吳長慶의 주력부대도 성밖에 주둔하고 있었다. 馬建忠은 우선 丁汝昌과 상의하여 다음날 정오에 吳長慶과 함께 대원군을 往拜하고 대원군의 出城報謁이 있을 때 拘送登舟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날 밤 馬建忠, 丁汝昌 양인은 吳長慶을 방문하여 이 기밀을 논의하였던 바 이때 吳長慶은 외교문제를 먼저 타결한 다음 내란을 평정할 것을 주장하여 반대하고 있다. 吳長慶이 외교문제를 더욱 급박하다고 본 것은 조·일교섭의 결렬과 花房公使의 仁川 퇴출이라는 상황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馬建忠은 일본과의 교섭을 타결토록 해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왕을 돕는 것이 아니라 대원군을 돕는 일이 된다는 점을 들어 설득하여 吳長慶의 동의를 얻었다. 대원군의 拘囚가 단행된 다음 馬建忠이 張樹聲에게 보낸 보고문을 보면 그가 어떤 판단하에 先制內亂을 주장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즉 그는 “조선의 현실문제를 살펴보건대 內患과 外憂가 극심한 바 외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내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내환을 제거하는 것이 외우에 대처하는 것보다 절박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조선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내환을 먼저 제거하여 국왕의 정치적 자주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 다음 日使를 접견하여 군란의 제반사태는 모두 난당의 소행으로 국왕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며, 이제 상국의 도움으로 反正이 이루어진 지금 전과 같

9) 上揭, 『東行三錄』 71쪽, 壬午 7월 10일條.

은 和好를 원하는 까닭에 所請한 각조에 대하여 협상하겠다고 한다던 명의가 올바르고 사리 또한 순리가 될 것입니다.”¹⁰⁾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다음 날인 7월 13일 아침에 우선 대원군납치결행을 위한 제반준비를 진행시켰다. 즉 아침 8시에 어윤중과 조영하를 남별궁으로 초치, 馬建忠은 어윤중으로 하여금 남별궁에 머물러 대기하도록 하였고, 조영하는 대원군 납치실행후 입궁하여 국왕을 위문하도록 하였다. 그 후 예정했던 대로 12시에 吳長慶이 남별궁에 도착하자 馬建忠은 儀衛兵의 수를 줄여 대원군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를 끝낸 후 雲峴宮에 도착, ‘談笑甚歡’하며 우호를 가장하였으며 퇴궁할 때 報謁을 간청하고 있다. 돌아온 후 吳長慶은 남문 밖에 주둔하고 있던 黃仕林군영에서 대기하였고, 馬建忠과 丁汝昌은 병력배치를 하기 위하여 일단 남별궁으로 돌아갔다. 이때의 청군 배치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習流軍 40명을 水原으로 선행 대가시켰고, 馬建忠은 남별궁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어윤중에게 이른바 嚇蹄書를 작성수교하고 저녁에 淸軍中營으로 가서 副將 何乘鰲와 함께 입궁하여 왕궁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營官 張光前에게 명하여 병사 100명을 이끌고 성문을 수비시켰고, 그 밖에 入京淸軍을 동원하여 성내경비를 담당시켰다. 이와 같이 병력배치를 끝낸 다음 馬建忠·丁汝昌 양인은 黃仕林군영으로 가서 대원군의 答拜를 기다렸다. 이때 黃營에는 대원군을 호송할 健卒 100명, 長夫 16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대원군이 數十騎의 護從을 이끌고 황영에 도착한 것은 4시가 지나서였다. 대원군은 군막에 인도되어 申時에서부터 酉時까지 필담이 계속되었는데 필담한 것이 24쪽에 이르렀다. 이 동안에 호종들은 청병에 의하여 모두 구류되었다. 이때 갑자기 馬建忠이 “대원군은 조선국왕이 청 황제의 책봉을 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라 질문하였으며, 대원군이

10) 上揭『淸季中日韓關係史料』, 第3卷, 845a·b쪽, 文件番號 534, 光緒 8년 7월 22일 署北洋大臣張樹聲函 附件 3, 〈照錄馬道建忠自朝鮮來稟〉.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조선국왕이 청 황제의 책봉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모든 政令은 국왕이 시행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대원군은 6월 9일의 군란으로 대권을 함부로 장악하고 정적을 주살하면서 私人을 등용하였으니 결국 황제가 책봉한 국왕을 물리쳐 守府케 한 것은 欺王한 것이고 이는 실로 황제를 가벼이 여긴 죄에 해당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왕과 부자관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寬假하는 바이니 곧 청으로 가서 황제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¹¹⁾라고 선언하였다. 이 말을 듣고 대원군이 멈칫했으나 馬建忠이 扶掖하여 강제로 끌려나가 삼엄한 청병의 감시아래 乘輿에 태워져 丁汝昌이 이끄는 건줄 100명의 호위를 받으며 마산포로 호송되었다. 대원군이 마산포로 호송된 것은 7월 14일 새벽이며, 도착 즉시 登瀛洲船에 승선되고 7월 20일에 天津으로 호송되었다. 대원군의 피수는 이렇게 하여 단행된 것이다.

대원군납치를 성공시킨 馬建忠과 丁汝昌은 즉시 입성하여 남별궁에서 대기중이었던 조영하와 어윤중으로 하여금 입궁하여 국왕에게 이 사실을 密奏케 하였고, 다음날 아침 吳長慶 명의로 된 通諭를 발표하여 대원군납치를 정당화시키면서 백성들의 소요를 엄금하였다. 뒤이어 馬建忠은 조·일교섭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측의 8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4항 손해배상 및 군비배상을 10만원이내로 할 것, 제5항중 咸興, 大邱, 楊花津의 開市 및 제7항 일본군 1개대대의 주둔문제는 극력 저지할 것 등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청측에서 제2단계 수습책으로 단행한 것이 이른바 亂黨剿辦이다. 馬建忠은 우선 대원군의 장자이며 訓練大將인 李載冕을 거세시키고자하여 7월 15일 오후 慶軍會辦營務處인 袁世凱와 공모, 그를 남별궁으로 유치하려 하였으나 이재면은 母病을 구실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馬建忠은 재차 대원군의 신상에 관한 중요한 일이라는 구실을 붙여 마침내 그를 남별궁에 유치, 연금시켰다. 그 직후 김윤식

11) 上揭, 『東行三錄』 72-73쪽, 壬午 7월 13일條.

으로 하여금 국왕에게 청하여 亂黨剿辦을 요청하는 글과 往十里일대 주민에게 알리는 告示文을 받아오게 하여 청군의 출동을 합리화시켰으며, 16일 새벽 3시까지 왕십리, 이태원 일대에 청군의 배치가 완료되었다. 왕십리 방면에는 張光前·吳兆有·何乘鰲軍이 포위하여 날이 밝자 일제히 공격을 가하였다. 왕십리 방면에서는 일부 군민들이 대항해 싸웠으나 많은 희생자를 내고 패하고 말았다. 이 전투 결과 청군에 의하여 체포된 군민은 왕십리 방면에서 150여명, 이태원 방면에서 20여명 도합 170여명에 달하였다. 청군측에서는 이들 전부를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단한 심문 결과 腰牌를 차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訓練都監 鄭完隣 등 11명을 軍亂가담자라는 죄명을 씌어 참수하였다. 청군수뇌부가 민심탄압의 방법으로 감행한 이같은 무차별 공격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도성의 질서는 공포분위기속에서나마 차츰 안정되어 갔다. 이러한 2단계의 조치로 청군출병의 임무는 끝났던 것이다.

馬建忠은 그의 사명이 일단 끝난 것으로 판단하여 吳長慶에게 慶軍을 그대로 조선에 주둔시켜 계속 조선정부를 보호하도록 요청한 다음 7월 20일에 陳奏使 조영하 일행과 함께 서울을 출발하였고 마산포에서 威遠艦에 승선, 天津으로 향하였다.¹²⁾

맺 음 말

이상이 임오군란에 있어서 청측 개입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가늠해 보기 위하여 주로 두 가지 문제 즉 그 하나는 군란 직전의 시점에서 볼 때 청측의 대조선인식과 정책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군란 직후 단행된 청측의 무력개입에 있어서

12) 上揭, 『清末 對朝鮮政策史研究』 第6章 大院君의 被囚 참조.

權錫奉, 〈壬午軍變〉, 國史編纂委員會, 『한국사』 16, 近代 開化斥邪運動, 1975, 所收 참조.

핵심이 되는 대원군피수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것이다.

우선 첫째 주목되는 점은 1879년, 1880년에 이르면 러·일의 조선에 대한 침략위협이라는 위기의식이 청의 양무관료들에 의해서 제고되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대조선정책도 적극간섭주의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추진된 것이 以夷制夷策을 위한 열국입약권도, 연미론이며 또한 '自固藩籬'를 위한 軍械學造事가 그것이다. 군란이 일어난 1882년 봄에는 이 두 정책이 실현되어 조·미조약이 체결되고, 영선사행이 파견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총리아문과 李鴻章이 종래에 유지해온 '密爲勸導'의 태도를 수정하여 적극간섭론 즉 중주권 강화론에 동조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군란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무력개입을 결정한 것은 이러한 청측의 대조선인식의 변화가 그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두번째 주목되는 점은 군란수습의 최대관건이 대원군제거문제에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다. 이 사실이 김윤식과 어윤중에 의해서 제안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언급하겠다. 평란의 길이 곧 대원군의 구수이며 이 일은 곧 왕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名正言順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대원군의 구수문제도 '折衷禮意'의 기본원칙하에서 구상되었고 馬建忠이 조영하, 김홍집에게 대원군제거에 관한 조선신민 公訴狀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세번째 주목되는 점은 김윤식, 어윤중의 행동양식에 관한 문제이다. 두 사람은 청의 무력개입은 물론 대원군제거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까. 한가지 명백한 것은 이 두 사람에게 軍民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秕政에 대한 반항의식, 욕구불만이나 나아가 무정견하고 설득력이 없는 개화정책에 대한 위화감정 등을 이해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대원군측에서 볼 때 개화 내지 비밀외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芟滅'의 대상에 속하고 있었으나 그것만으로

대원군제거에 시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군신관계라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엄존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임오군란에 있어서 청의 개입은 불행한 사실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정당성은 부인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바이다.